

의	무기	록	대	춬.	열람	밓	반납	관리

관리번호	W-12.1(10)	제정일	2013년 02월 15일
승인책임자	병원장	최근개정일	2016년 10월 31일
검토책임자	규정관리위원장	시행일	2016년 12월 01일
주무부서	심사과, 원무과	검토주기	3년
관련근거	의료기관인증기준12.1	검토예정일	2019년 10월 30일

|. 목적

의무기록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목적 이외의 정보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한 다.

Ⅱ. 적용범위

전자의무기록에 한한다.

Ⅲ. 정책

- 1. 의무기록 열람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허가된 권한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.
- 2. 세부내용은 [W-12.1(1) 의료정보의무기록의 개인정보 취급관리 및 책임]에 따른다.
- 3. 열람은 진료용과 진료용 이외로 구분된다.
- 4. 진료용 목적으로 열람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열람이 이루어진다.
- 5. 진료용 이외의 열람은 열람용도(사유)를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이력이 저장 관리된다.
- 6. 의무기록은 용도에 따라 대출 · 열람 기한을 정한다.
- 7. 의무기록담당자는 열람사유별 또는 용도별 열람이력을 관리한다.
- 8. 해당 의무기록을 열람함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열람한 자에게 있다.

Ⅳ. 절차

- 1. 전자의무기록 열람 관리
 - 1) 열람 신청절차
 - (1) 진료용 목적으로 열람할 경우
 - ① 입원 : 원무과에서 입원수속 후 입원력이 있으면 자동 열람
 - ② 외래 : 진료예약 또는 접수 후 자동 열람
 - (2) 진료용 이외의 열람할 경우
 - ① 열람용도(사유)를 반드시 체크하여야만 열람이 가능하다.
 - ② 용도에 따라 열람기한이 정해져 있다.
 - -전자의무기록 용도별 열람 기한[별첨 1]에 따른다.
 - 2) 열람 기한
 - (1) 진료용 목적으로 열람
 - ① 입원 : 퇴원 후 ~ 30일 ② 외래 : 진료 후 ~ 7일
 - (2) 진료용 이외의 열람 : 전자의무기록 용도별 열람기한[별첨 1]에 따른다.
 - (3) 열람사유별 또는 용도별 열람이력 관리



- ① 열람 사유별 또는 용도별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열람 후에는 이력이 저장된다.
- ② 의무기록담당자는 열람일시, 열람용도, 열람서식, 열람자, 소속부서, 열람 소요 시간 등 열람이력을 관리한다.
- 2. 환자본인 및 보호자가 의무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[W-12.1(2) 의무기록 사본발급 관리]에 따른다.
- 3. 외부기관에서 의무기록 열람을 요청 시는 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 제2항 국민건강 보험법, 의료 급여법, 형사소송법, 민사소송법 등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관계공무원은 업무 수행 상 의무기록의 열람이 가능하며 소속기관장의 공문과 공공기관 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V. 참고

- 1. 의료법 제21조, 제22조, 제23조
- 2. 의무기록 접근권한 관리 지침

[별첨]

별첨1. 전자의무기록 용도별 열람 기한

입안자	규정관리위원장	
승인책임자	병원장	
서명일		



[별첨 1] 전자의무기록 용도별 열람 기한

전자의무기록 열람			열람 기한	비고	
	이제지로	예약	진료일 이후 ~ 7일	용도(사유)입력 없이 열람가능	
진료용	외래진료	당일접수	진료일 이후 ~ 7일		
	입원진료		퇴원후 ~30일	20/10	
	입원용				
	연구용				
	집담회용				
	심시	사용		용도(사유) 입력 후 열람가능	
진료용 이외	정리	1용	1일		
	원드	무용		20/10	
	환자	상담			
	예약	상담			
	기	타			